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

(앞쪽)

발행번호		접수번호			
확인 완료일		접수 연월일			
신청인	상호(명칭)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
			(전자우편:)	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
확인 제품	제조·수입	[] 제조 [] 수입	품목		
	제품명		용도		
	제형		중량·용량·매수		
	제조국명(수입의 경우)		제조회사명(수입의 경우)		
확인 결과	■ 검사방법:		■ 환경조건: 온도 () ℃, 습도 () % R.H.		
	검사 구분	판정	부적합 사항	비고	종합판정
					[] 적합 [] 부적합
	작성자:		기술책임자:		
	유효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시험·검사기관

직인

유의사항
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받거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- 위 판정은 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에 한정하여 확인된 결과입니다.

1. 화학물질 확인결과

연번	확인항목	확인기준	확인결과	판정	비고

2. 용기·포장 및 중량 확인결과

연번	확인항목	확인기준	확인결과	판정	비고

3. 어린이보호포장 확인결과

연번	확인항목	확인기준	확인결과	판정	비고

4. 제품 사진

전면	후면